

#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 운영규칙

|      |               |
|------|---------------|
| 제정   | 2015. 01. 06. |
| 개정   | 2016. 01. 13. |
| 개정   | 2017. 04. 11. |
| 개정   | 2018. 01. 08. |
| 전부개정 | 2019. 06. 14. |
| 개정   | 2019. 12. 30. |
| 개정   | 2020. 05. 06. |
| 개정   | 2020. 10. 20. |
| 개정   | 2021. 04. 26. |
| 전부개정 | 2022. 11. 22. |
| 개정   | 2023. 06. 09. |
| 전부개정 | 2024. 02. 28. |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제3항제13호 및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52조제2항제4호,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운영규정」 및 「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된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 사업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령 및 다른 내규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른다.

②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의 회계예규·고시·통첩·훈령 등 계약 관련 법규 및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한다.

③ 제1항 이외에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공동훈련센터는 기획재정부에서 매년 발간하는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등을 준용하여 공동훈련센터 내부규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 사업(이하 “지산맞 사업”이라 한다)”이란 지역 산업계가 주도하고 지역 노·사·민·정이 참여하여 지역 인력 및 훈련 수요·공급조사를 통해

지역 내 중소기업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이하 “지역인자위”라 한다)”란 「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6조에 따라 지역별로 설치된 위원회를 말한다.
3.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사업(이하 “컨소시엄 사업”)이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2조제1항제6호,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업주, 사업주단체 등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둘 이상의 사업주와 협약을 체결하여 근로자 등을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을 말한다.
4.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란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운영규정」(이하 “컨소시엄 운영규정”이라 한다) 제9조 및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운영규칙」(이하 “컨소시엄 운영규칙”) 제5조에 따라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설치된 위원회를 말한다.
5. “기초수요조사”란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운영규칙」(이하 “지역인자위 운영규칙”이라 한다) 제3조제9호에 따라 지역의 전반적 인력 및 훈련 수요를 개괄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기업에 구조화된 조사문항을 활용하여 실시하는 정량조사를 말한다.
6. “심층수요조사”란 지역인자위 운영규칙 제3조제10항에 따라 기초수요조사로 파악하기 어려운 심층 정보 파악 및 분석을 위해 기초수요조사와 별도로 연중수시로 시행되는 정량 및 정성 수요조사를 말한다.
7. “산업맞춤형공동훈련센터”(이하 “공동훈련센터”라 한다)는 전 산업분야 대상, 훈련수요에 따라 훈련과정을 개발하여 재직자 및 채용예정자 대상 직무훈련을 실시하는 공동훈련센터를 말한다.
8. “지역·산업 맞춤형 과정”(이하 “지산맞 과정”이라 한다)이란 산업맞춤형공동훈련센터가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기초수요조사와 심층수요조사 및 수급분석 결과 등을 근거로 협약기업을 발굴하고 수요를 파악하여 개발한 훈련과정을 말한다.
9. “자율공동훈련센터”란 컨소시엄 운영규정 제2조제5호에 따라 공동훈련센터로 선정된 날로부터 3년을 초과한 산업맞춤형 공동훈련센터 중 컨소시엄 사업의 자율적 운영을 확대하기 위하여 공단 이사장이 선정한 공동훈련센터를 말한다.
10. “파트너훈련기관”이란 제12조에 따라 지산맞 사업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을 말한다.
11. “협약기업”이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2조제1항제6호에 따라 훈련생에 대한 교육훈련 실시 및 채용 등에 관하여 공동훈련센터와 상호 협력하기로 협약을 체결한 중소기업을 말한다.
12. “지원금”이란 공단이 컨소시엄 운영규정 제19조에 따라 공동훈련센터에 지급하는 운영비(인건비를 포함한다), 훈련시설 및 장비비, 프로그램개발비를 말한다.
13. “부담금”이란 공동훈련센터가 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정부지원금 지원 및

- 집행기준」에 따라 부담해야 하는 금액을 말한다.
14. “훈련비용”이란 훈련과정 운영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훈련비, 식비·숙식비·훈련수당 등의 비용을 말한다.
  15. “단위기간”이란 훈련비용을 지급하기 위한 최소 단위의 기간을 말하며, 훈련개시일부터 매 1개월을 주기로 구분한다.
  16. “기준단가”란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이하 “사업주 지원규정”이라 한다) 제27조에 따른 직종별 훈련비 기준단가를 말한다.
  17. “지원단가”란 「컨소시엄 공동훈련센터 정부지원금 지원 및 집행기준」(이하 “정부지원금 지원 및 집행기준”이라고 한다)에 따른 1인 기준의 시간당 단가를 말한다.
  18. “연인원”이란 해당 사업연도에 지산맞 사업 훈련과정을 수료한 총 누적인원을 말한다.
  19. “허브사업단”이란 컨소시엄 운영규정 제25조 및 「국가인적지원개발컨소시엄 운영규칙」(이하 “컨소시엄 운영규칙”이라고 한다)에 따라 지산맞 사업 및 공동훈련센터를 지원하기 위하여 공단이 선정한 기관을 말한다.
  20. “수시훈련과정”이란 지역인자위의 심층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공동훈련센터가 연간 훈련계획에서 정한 훈련과정 이외에 추가로 개설하는 훈련과정을 말한다.
  21. “훈련과정 수요조사”란 공동훈련센터가 지역인자위의 수요조사를 토대로 훈련과정 개설을 위해 협약기업의 훈련요구를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22. “집체훈련”이란 훈련을 실시하기 적합하다고 인정받은 시설에서 훈련생을 모아 놓고 실시하는 훈련을 말한다.
  23. “인터넷원격훈련”이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려는 자가 정보통신매체를 활용하여 훈련을 실시하고, 훈련생관리 등이 정보통신망으로 이루어지는 원격훈련을 말한다.
  24. “비대면실시간훈련”이란 화상프로그램을 통해 교·강사와 훈련생이 쌍방향으로 실시간 소통하면서 이루어지는 훈련을 말한다.
  25. “혼합훈련”이란 집체훈련과 인터넷원격훈련을 병행(비대면실시간훈련을 병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이루어지는 훈련을 말한다.

**제4조(수행업무)** ① 공단은 지산맞 사업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컨소시엄 운영규정 제3조에 따른 업무
2. 산업맞춤형공동훈련센터 지원
3.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4. 공동훈련센터 선정, 선정 취소 및 지원제한 등 검토
5. 공동훈련센터 사업계획 심사 및 지원금 지급·관리
6. 공동훈련센터 사업계획 변경 심사

7. 지산맞 과정 인정 및 훈련비용 지급 업무
  8. 공동훈련센터 훈련 운영 및 지원금 관리·사용에 대한 모니터링
  9. 공동훈련센터 회계정산 수행자의 선정 및 지정
  10. 공동훈련센터 선정 취소 등에 따른 지원금 환수
  11. 공동훈련센터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12. Best CHAMP 대회(우수사례경진대회) 개최
  13. 그 밖의 지산맞 사업과 관련된 업무
-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업무 중 일부를 공단 소속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 ③ 공단은 컨소시엄 운영규정 제6조에 따라 다음 연도 지산맞 사업의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연도 말까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5조(지원기관)** ① 공단은 지산맞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컨소시엄 운영규정 제25조 및 컨소시엄 운영규칙 제46조에 따른 허브사업단을 지원기관으로 활용할 수 있다.
- ② 허브사업단은 지산맞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컨소시엄 운영규칙 제46조제2항의 연간 사업계획서에 반영하여 공단에 제출할 수 있다.
- ③ 허브사업단 사업계획서 승인 및 지원금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컨소시엄 운영규칙에 따른다.
- ④ 공단은 필요할 경우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통하여 제1항의 지원기관 이외의 별도의 지원기관을 선정·지원할 수 있다.

## 제2장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심의위원회

- 제6조(심의위원회 업무)** 공단은 컨소시엄 운영규정 제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1. 공동훈련센터의 선정 및 선정 취소에 관한 사항
  2. 공동훈련센터의 사업계획 승인 및 지원금 결정 등에 관한 사항, 다만 사업계획 변경의 경우에는 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공동훈련센터의 지원 제한 등에 관한 사항
  4. 공동훈련센터 사업결과 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공단 이사장이 컨소시엄 사업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7조(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컨소시엄 운영규칙을 따른다.

② 공단은 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5 「심의위원회 위원수당 등의 지급기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심사위원풀 구성 및 운영)** ① 공단은 컨소시엄 운영규정 제9조, 동 규칙 제6조에 따른 심의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풀을 구성할 수 있으며, 심사위원풀내에서 심사위원단을 구성하여 심사를 수행한다.

1. 컨소시엄 운영규정 제9조에 따른 공동훈련센터의 선정 등에 관한 사항
2. 컨소시엄 운영규정 제11조에 따른 시범사업 공동훈련센터 선정
3. 컨소시엄 운영규정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검토
4. 그 밖에 이사장이 요청하는 사항

② 심사위원의 구성 및 관리 등에 대한 사항은 「직업능력개발사업 전문가 관리지침」에 따라 운영한다.

③ 공단은 심사에 참여한 심사위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5 「심의위원회 위원수당 등의 지급기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비밀유지 및 윤리준수의 의무)** ① 심의위원회 위원 및 심사위원은 지산맞 사업과 관련한 심사 등을 하면서 알게 된 고객정보, 심사·결과 등에 관한 사항을 공표·누설하거나 업무 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② 공단 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비밀유지 및 윤리준수의 의무를 위하여 위원들에게 공단의 「위원회 운영 표준규칙」 별지 제2호 서식의 청렴서약서 및 제3호 서식 이해충돌 방지 사전진단서를 받아 두어야 한다.

### 제3장 공동훈련센터 선정 및 운영

**제10조(공동훈련센터 선정)** ① 지역인자위는 공모를 통해 관할 구역 내의 훈련기관 중 훈련인프라와 역량이 우수하고 지역인력 및 훈련수급조사 결과에 부합하는 인력양성이 가능한 훈련기관을 공동훈련센터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 지역인자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제1항의 공동훈련센터로 선정할 수 있다.

1. 「고용보험법」 제8조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업
2. 사업주단체 또는 그 연합체
3. 「고등교육법」 제4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학교, 「평생교육법」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

발법」 제39조에 따른 기능대학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5.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32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6. 공공성과 전문성을 갖춘 우수한 교육훈련기관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추천을 받은 기관(비영리기관만 해당한다)
  7. 그 밖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은 기관
- ③ 공동훈련센터 선정을 위한 심사위원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계, 연구기관, 기업체 등에서 해당 분야의 연구 또는 현장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2. 대한민국명장, 기술사, 기능장 등 자격을 갖춘 사람
  3. 직업능력개발사업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추었다고 공단 이사장이 인정하는 사람
  4. 대학의 회계학과 교수,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회계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 ④ 지역인자위의 요청이 있는 경우 공단은 「직업능력개발사업 전문가 관리지침」에 따른 인력풀 중에서 심사위원을 추천할 수 있다.
- ⑤ 공동훈련센터 선정을 위한 심사기준, 심사방법 등은 별표 1에 따른다.
- ⑥ 공단 이사장은 별표 1에서 정한 사항 외에 공동훈련센터 선정을 위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지역인자위에 제공할 수 있다.
- ⑦ 지역인자위가 선정한 공동훈련센터의 사업계획은 공단 본부의 지산맞 사업 계획 심사 및 심의를 통해 최종 확정하며, 공단 본부는 지산맞 사업 계획 심사 및 심의 시 공동훈련센터 선정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훈련센터로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
- ⑧ 공단 이사장은 제7항의 지산맞 사업 계획이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되면 별지 제2호 서식의 지산맞 사업 운영에 관한 표준약정서에 따라 공동훈련센터와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약정 체결은 공단 지부·지사장이 공단 이사장을 대리하여 체결할 수 있다.
- ⑨ 지역인자위와 공동훈련센터 간에는 상호 간의 협의에 따라 별도 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

**제11조(공동훈련센터 선정 취소 및 지원제한 등)** ① 컨소시엄 운영규정 제12조에 따른 선정 취소 및 지원제한 등에 대한 세부기준은 이 규칙 별표 4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이 제한된 공동훈련센터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등 직업교육훈련 관련 법령에 따른 처분내용 등을 고려하여 훈련계획을 수립하는 등 공단 이사장이 요구하는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1조의2(자율공동훈련센터의 선정 등)** ① 이사장은 공동훈련센터로 선정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공동훈련센터 가운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자율공동훈련센터로 선정할 수 있다. 다만, 자율공동훈련센터로 선정하고자 한 날부터 이전 2년 이내 「국민 평생 직업능력개발법」 및 「고용보험법」 등 직업훈련 관련 법령 위반에 따라 훈련과정의 인정취소, 훈련과정의 위탁 및 인정 제한,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시정명령은 제외한다)을 받은 공동훈련센터는 자율공동훈련센터로 선정할 수 없다.

1. 최근 2년간 계속해서 컨소시엄 운영규정 제18조에 따른 성과평가의 결과가 상위 100분의 30 범위 내 속하는 공동훈련센터
  2. 컨소시엄 운영규정 제11조에 따라 선정된 공동훈련센터 및 고용노동부장관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해당 공동훈련센터의 적정한 운영을 위하여 자율공동훈련센터로 선정할 것을 요청한 공동훈련센터
- ② 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자율공동훈련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율공동훈련센터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자율공동훈련센터로 선정된 후 「국민 평생 직업능력개발법」 및 「고용보험법」 등 직업훈련 관련 법령 위반에 따라 훈련과정의 인정취소, 훈련과정의 위탁 및 인정 제한,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시정명령은 제외한다)을 받은 경우
  2. 제20조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의 결과가 연속하여 2회 이상 상위 100분의 30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3. 제20조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의 결과가 1회 이상 상위 100분의 50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4.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자율공동훈련센터로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제12조(파트너훈련기관의 선정)** ① 지역인자위는 효율적인 인력양성을 위해 공동훈련센터와 협력하여 지역 인력을 양성할 파트너훈련기관을 선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파트너훈련기관으로 참여가 가능한 기관은 「국민 평생 직업능력개발법」에 따라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서 시행하는 훈련기관 인증을 받은 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2. 사업주단체 및 그 연합체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전문대학
  4.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5. 「학원의 설립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평생직업교육학원
  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훈련사업 실시 경험이 있는 기관
  7. 다른 법령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 또는 기관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단 이사장은 지역별 인력양성사업의 활성화 또는 시범사업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파트너훈련기관의 참여 자격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파트너훈련기관으로 참여하는 기관은 여러 공동훈련센터의 파트너훈련기관으로 참여할 수 있으나, 공동훈련센터의 자격으로 지산맞 사업에 참여할 수는 없다.

**제13조(협약체결)** ① 제10조에 따라 공동훈련센터 선정을 통지받은 훈련기관은 지체 없이 별지 제3호 서식의 지산맞 사업 협약서에 따라 협약(예정)기업과 체결한 협약서의 사본 직업능력개발정보망(이하 “HRD-Net”이라 한다)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공동훈련센터는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2조의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하는 기업과 협약체결을 하여야 한다.

**제14조(공동훈련센터 사업계획의 제출 및 심사)** ① 공동훈련센터는 컨소시엄 운영 규정 제13조 및 지역인자위에서 공고하는 내용에 따라 10월 말까지 다음 연도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지역인자위에 제출하고 HRD-Net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공동훈련센터는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 공단이 정한 기간 동안의 실적 중 별표 3에 규정된 사항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동훈련센터가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때에는 훈련 연인원은 최소 500명 이상이어야 하며 협약기업은 최소 30개 이상이어야 한다.

④ 공동훈련센터는 해당 지역인자위 관할 구역 내의 기업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 효과성 제고를 위하여 별도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협약기업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소재지와 관계없이 기업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지역, 규모 또는 업종별 특성 등에 따라 최소 목표 인원 및 협약기업 수를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로 조정할 수 있다.

⑥ 공동훈련센터가 파트너훈련기관을 활용하려는 경우 선정된 파트너훈련기관의 훈련 계획과 파트너훈련기관에 지급할 비용(훈련비용만 해당한다)에 대한 세부내역을 훈련 계획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⑦ 지역인자위는 공동훈련센터가 제출한 사업계획을 사업주 지원규정 및 컨소시엄 운영규정, 이 규칙 별표 2의 내용을 반영하고 공단 이사장이 정한 기준과 절차를 준수하여 심사 및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⑧ 공동훈련센터는 파트너훈련기관의 운영에 대해 전반적인 관리 권한과 의무를 지며, 파트너훈련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현장 확인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파트너훈련기관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⑨ 공동훈련센터가 파트너훈련기관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예정일 20일 전까지 공단 지부·지사장에게 사업운영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 지부·지사장은 파트너훈련기관을 변경하는 것이 적정한지를 심사하여 변경예정일 3일 전까지 공동훈련센터에 승인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단, 지역인자위가 심사·승인한 수시훈련

과정인 경우는 지역인자위의 사전 승인을 거쳐야 한다.

⑩ 파트너훈련기관의 훈련비용 신청·지급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제30조제7항을 준용한다.

**제15조(지산맞 사업계획 제출 및 심사)** ① 지역인자위는 제14조에 따른 공동훈련센터의 사업계획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수립한 지산맞 사업계획을 매년 11월 말까지 심의·의결하고 이를 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별도 지침에 따라 지산맞 사업 계획을 심사하되, 심사위원회 심사 및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순으로 실시한다.

③ 공단은 컨소시엄 운영규정 제13조제3항에 따라 지산맞 사업 계획에 대한 수정·보완이 필요할 경우 해당 지역인자위에 기한을 정하여 지산맞 사업 계획의 수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공단은 제3항에 따라 수정·보완 요구를 받은 지역인자위 또는 공동훈련센터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이를 수정·보완하지 않는 경우 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바에 따라 지산맞 사업 계획을 불승인하고 지원금을 지원하지 않거나, 지원금을 삭감 또는 유보하고 지산맞 사업 계획을 승인할 수 있다.

**제16조(사업계획 변경)** ① 지역인자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지산맞 사업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변경예정일 30일 전까지 지역인자위 심의·의결을 거쳐 공단 이사장에게 지산맞 사업계획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훈련과정의 수를 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지산맞 사업 계획상의 훈련과정 수(단, 하나의 훈련과정을 다수에 걸쳐 운영하는 경우 하나의 훈련과정으로 본다)보다 100분의 20 이상을 감축하려는 경우(2회 이상 변경 신청을 요청한 경우 변경 요청한 훈련과정 수의 누계가 100분의 20 이상이 감축되는 시점에 변경 신청하여야 한다)
2. 제3조제18호에 따른 연인원을 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훈련인원 대비 100분의 30 이상 감축하려는 경우
3. 「고용정책기본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고용사정이 급격히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어 컨소시엄 운영규정 제1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관한 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② 공동훈련센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예정일 30일 전까지 이사장에게 사업계획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하며, 지역인자위에 해당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1. 컨소시엄 운영규정 제19조제1항의 지원금 증액이 필요한 경우
2. 인건비, 일반운영비, 훈련시설·장비비, 프로그램개발비의 각 지원항목 간 변경

이 필요한 경우

3. 훈련시설·장비의 투자계획 변경 등으로 인하여 승인받은 사업계획에 없는 품목에 대해 지원금 사용이 필요한 경우

4. 훈련시설 및 장비비, 프로그램개발비의 입찰차액(집행 잔액을 포함한다) 사용이 필요한 경우

③ 공단 이사장은 제2항에 따른 심사 시, 필요에 따라 지역인자위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 제1항, 제2항에 따라 사업 계획 변경 신청을 받은 공단 이사장은 변경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여 변경예정일 3일 전까지 해당 지역인자위와 공동훈련센터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⑤ 공동훈련센터는 조달 입찰계약 절차에 따라 일괄 계약을 하여 훈련시설·장비의 단가가 변경되고, 훈련시설 및 장비비의 증액이 없는 경우, 컨소시엄 운영규정 제14조제2항에 따라 「정부지원금 지원 및 집행기준」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운영위원회의 사전 심의·의결을 거쳐 지원금을 변경하여 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동훈련센터는 변경예정일까지 운영위원회 의결 결과를 공단 및 지역인자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공단은 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사유로 공동훈련센터 사업계획이 변경되어 지원된 지원금의 반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업연도 중이라도 해당 공동훈련센터에 감가상각비 등 지원금 반환을 요청할 수 있다.

⑦ 공동훈련센터는 컨소시엄 운영규정 제1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경예정일까지 변경사항을 공단 본부 및 지부·지사, 지역인자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공동훈련센터의 기관명, 주소지, 사업자등록번호가 변경되는 경우
2. 기업합병 등으로 공동훈련센터 지위가 변경되는 경우
3. 대표자 등 사업 관계자의 변경이 있는 경우

**제17조(자율공동훈련센터의 사업계획심사 등)** ① 제14조제7항도 불구하고 지역인자위는 자율공동훈련센터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대해서는 지원금의 적정성 여부와 지역수요 반영 여부만 심사하여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제1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자율공동훈련센터로 선정된 기관이 컨소시엄 운영규정 제18조에 따른 전년도 성과평가의 결과가 상위 100분의 30 범위 내에 속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역인자위는 인력수급, 산업계 수요 등을 고려하여 컨소시엄 사업의 적정한 운영을 위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해당 공동훈련센터의 사업계획서 전부를 심사하여 결정할 수 있다.

**제18조(자율공동훈련센터의 사업계획 변경 등)** ① 제16조에도 불구하고 자율공동훈

런센터가 운영위원회의 사전 심의·의결을 거쳐 사업계획을 변경(컨소시엄 운영규정 제19조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증액이 없는 경우에 한함)할 수 있으며, 다음연도 사업계획서 제출 전까지 공단에 사업계획의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율공동훈련센터는 규정 제19조에 따른 지원금 증액이 있는 경우 또는 이 규칙 제30조제5항에 따라 지원항목별 부담금 변경이 있는 경우 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19조(컨소시엄 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공동훈련센터는 컨소시엄 운영규정 제15조에 따라 컨소시엄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동훈련센터는 운영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내부 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운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운영위원회의 장이 긴급하거나 경미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동훈련센터의 장 또는 컨소시엄 사업 총괄책임자로 한다.

④ 공단 직원 또는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제외한 해당 공동훈련센터의 사업관계자는 운영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다. 단, 다른 공동훈련센터 사업관계자는 운영위원회 구성인원의 20% 이내로 참여할 수 있다.

⑤ 컨소시엄 운영규정 제15조제2항제6호에 따라 지역인자위는 운영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다.

⑥ 컨소시엄 운영규정 제15조제1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시설·장비의 내용년수 도래에 따른 불용에 관한 사항은 이 규칙 제36조제2항을 따른다.

⑦ 제1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산맞 사업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지역인자위가 운영위원회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제20조(공동훈련센터의 성과평가 및 활용)** ① 공단 이사장은 사업연도별로 공동훈련센터 성과평가 지표에 따라 공동훈련센터별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이 규칙 제16조에 따라 훈련 목표인원이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목표인원을 대상으로 성과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공단 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가 우수한 공동훈련센터에는 컨소시엄 운영규정 제19조제1항에 따른 운영비 지원한도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공동훈련센터는 제2항에 따라 장려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이 규칙 별지 제5호 서식의 지산맞 사업 성과평가 우수기관 장려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공동훈련센터는 장려금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1. 직업훈련전담자(이하 “전담자”라 한다)에 대한 성과급
  2. 일반운영비(다만, 매식비는 성과급의 100분의 30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다)
  3. 지산맞 사업과 관련된 비용
- ⑤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가 부진한 공동훈련센터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세부기준은 별표 4에 따른다.
- ⑥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선정 취소 통지를 받은 공동훈련센터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는 공동훈련센터 선정을 위한 신청을 할 수 없다.

**제21조(전담자의 업무 등)** ① 전담자는 지산맞 사업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연간 사업계획서 작성, 사업실적 및 성과관리 등의 업무
  2. 교육훈련 및 평가계획 수립, 교육훈련 실시 및 관리 등의 업무
  3. 사업예산 관리 및 훈련비용 신청 등의 업무
  4. 훈련생 관리 및 상담, 교·강사 선정 및 관리, 교재 및 교보재 개발 등의 업무
  5. 협약기업 발굴, 협약기업 유지 및 관리 등의 업무
  6. 협약기업 훈련과정 수요조사 실시 및 분석 등의 업무
  7. 파트너훈련기관 운영, 현장점검 및 관리 등의 업무
  8. 컨소시엄 운영위원회 운영 및 관리
  9. 그 밖에 공단 이사장이 정하는 업무
- ② 공동훈련센터는 허브사업단 등에서 운영하는 직무교육 훈련과정 등에 소속 전담자를 포함한 컨소시엄 사업 관계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③ 인건비를 지원받는 전담자는 제1항에 해당하는 업무 이외의 다른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제22조(협약기업을 위한 직업훈련 실시)** ① 공동훈련센터는 인자위 운영규칙에 따른 기초·심층수요조사 결과에 부합하는 훈련과정을 개발하여야 한다.

- ② 공동훈련센터는 제1항의 훈련과정에 대해 훈련과정 수요조사 실시 후 향상훈련 또는 채용예정자훈련 등 적절한 교육훈련을 제공하여야 하며, 해당 사업연도 내에 훈련과정을 종료하여야 한다.
- ③ 공동훈련센터는 협약기업의 재직근로자 등을 위한 직업훈련을 「국민 평생 직업 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및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에 따른 집체훈련, 비대면실시간훈련, 인터넷원격훈련, 혼합훈련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 ④ 공동훈련센터는 원거리 지역으로 훈련장비 이동이 가능한 과정의 경우 공단의 사전 승인을 받고 협약기업의 사업장 등 공동훈련센터의 시설 이외의 장소로 이동하여 일시적으로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훈련장소는 공동훈련센터가 속해 있는 지역인자위의 관할구역 내에 위치함을 원칙으로 하되, 제14조제4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관할구역 외의 협약기업 근로자 등을 주된 훈련대상으로 하는 경우 훈련 대상자의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⑤ 공동훈련센터는 필요한 경우 공단의 사전 승인을 받고 협약기업의 재직근로자나 채용예정자 이외의 사람을 합반하여 교육훈련 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⑥ 공동훈련센터로 선정된 기관은 다른 공동훈련센터의 파트너훈련기관이 될 수 없다.

⑦ 공동훈련센터는 협약기업의 훈련승인 및 직무수준을 반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파트너훈련기관을 활용하여 협약기업의 재직근로자 등에게 직업훈련을 제공할 수 있다.

1. 협약기업의 훈련수요가 많거나 지역적으로 산재되어 있어 공동훈련센터의 자체 시설만으로는 협약기업의 훈련수요를 충족할 수 없는 경우
2. 협약기업이 요구하는 훈련과정을 공동훈련센터의 시설·장비, 교·강사 등으로는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
3. 협약기업이 요구하는 훈련과정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시설·장비 등의 투자가 요구되나, 신규 시설·장비 등을 투자하는 것보다 다른 훈련기관을 통하여 제공하는 것이 비용, 교육훈련 효과 등의 측면에서 합리적이라 인정되는 경우

**제23조(훈련생의 모집 및 선발)** ① 공동훈련센터는 훈련생을 모집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1. 훈련생이 원활하게 훈련과정을 선택·수강하고 취업할 수 있도록 해당 훈련과정의 수강에 요구되는 선행학습에 관한 사항
2. 해당 훈련과정 수료 후 취업 등 진로에 관한 사항
3. 지산맞 사업 관련 규정 중 훈련생의 의무와 권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안전·보건 및 재해위로금 등 훈련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공동훈련센터는 훈련생을 재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안전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공동훈련센터는 훈련생이 해당 훈련 중에 재해를 입은 경우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11조에 따른 재해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24조(훈련과정의 운영 등)** ① 공동훈련센터가 심의위원회에서 승인한 지산맞 사업 계획에 따라 훈련을 실시하려는 경우 사업주 지원규정 제8조에 따른 훈련실시신고 등을 하여야 한다.

② 공동훈련센터는 ‘훈련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훈련시간이 40시간 미만인 훈련과정’의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변경신고가 아닌 확정자 신고를 해야 한다.

③ 공동훈련센터의 훈련실시신고 및 변경인정, 출결관리 등 훈련과정 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사업주 지원규정을 준용한다.

**제25조(훈련비 지원을 위한 수료기준)** 훈련비용의 지원을 받기 위한 수료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집체훈련과정 및 비대면실시간훈련과정

가. 해당 훈련과정의 인정받은 훈련일수의 100분의 80이상(훈련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훈련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인정받은 훈련시간의 100분의 80이상)을 출석해야 한다.

나. 해당 훈련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2. 인터넷원격훈련과정(단, 비대면실시간훈련과정은 제외)

가. 학습진도율이 100분의 80이상일 것, 다만 1일 학습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나. 가목 이외에 훈련실시자가 수립한 수료기준에 도달해야 한다.

3. 혼합훈련과정은 제1호 및 제2호의 해당 훈련방법에 따른 수료기준을 각각 충족하여야 한다.

**제26조(수시훈련과정 심사 및 승인)** ① 지역인자위는 지역인자위 운영규칙 제25조 제2항에 따라 실시한 심층수요조사 결과, 추가적인 훈련과정의 개설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공동훈련센터 및 파트너훈련기관으로 하여금 수시훈련과정을 개설하게 할 수 있다.

② 지역인자위는 지산맞 사업 계획에 포함된 공동훈련센터 및 파트너훈련기관 이외의 신규 훈련기관을 기존 공동훈련센터의 파트너훈련기관으로 지정하도록 하여 수시훈련과정을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③ 수시훈련과정은 컨소시엄 운영규정 제19조제1항의 지원금이 추가로 지급되지 않는 과정만 개설할 수 있다. 다만, 심의위원회에서 승인된 최종 지산맞 사업 계획 이외의 훈련과정을 추가하여 지원금 소요가 추가로 발생하는 경우 심의위원회에서 별도로 심의·의결을 거쳐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④ 지역인자위는 지역 내 수요에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수시훈련과정 신청서류를 공단 지부·지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수시훈련과정을 승인한 공단 지부·지사장은 승인사항을 공단 이사장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라 파트너훈련기관을 추가하는 경우도 제4항과 같다.

⑥ 공단 이사장은 지역별 인력양성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시훈련과정을 지역인자위에서 심사하도록 할 수 있다.

⑦ 본 조에 따른 해당 사업연도 수시훈련과정 및 인원, 신청 및 심사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공단 이사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27조(훈련실적 산정 등)** 공동훈련센터의 훈련실적은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HRD-Net에 등재된 수치로 산정한다.

- 제28조(현장 모니터링 실시)** ① 공단 지부·지사와 지역인자위는 컨소시엄 운영규정 제17조제5항에 따라 공동훈련센터 현장 모니터링(훈련현장방문, 관계인면담, 설문조사, 훈련관련 조사 및 확인 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모니터링 담당자는 공동훈련센터에 대한 사업계획심사, 지도점검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정부지원 시설·장비 및 훈련 실시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현장 모니터링은 훈련과정이 운영되고 있는 평일에 훈련 현장을 방문하는 방법으로 실시하고 훈련실시자에게 사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하거나 미리 알릴 경우 모니터링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 ③ 모니터링 담당자는 사전에 통보하지 않고 현장모니터링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훈련 실시자에게 공문 및 신분증을 제시한 뒤 모니터링의 취지를 설명하고 협조하여 줄 것을 요청해야 한다.
- ④ 모니터링 담당자는 훈련 실시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을 실시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 육하원칙에 따라 발견 사실을 기재한 「확인서」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지방고용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⑤ 공단 지부·지사의 직원은 부정·부실 훈련을 실시할 우려가 있는 훈련과정에 대해서는 사전에 소속기관장의 승인을 받아 휴일 및 야간에도 실시할 수 있다.
- ⑥ 제5항 단서에 따른 휴일 현장모니터링은 소속기관장의 승인을 받아 외부 전문가를 활용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외부전문가에게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업무처리지침」의 <사업주훈련 휴일 모니터링에 따른 수당 지급기준>에 따른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29조(모니터링에 따른 시정 요구)** ① 공단 지부·지사와 지역인자위는 공동훈련센터를 모니터링 및 지도·점검하고, 필요 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 ② 공동훈련센터는 제1항에 따른 시정 요구에 대하여 15일 이내에 개선계획 등을 공단과 지역인자위로 보고하여야 한다.

#### 제4장 공동훈련센터에 대한 지원 및 정산 등

- 제30조(지원금의 신청 및 관리 등)** ① 공동훈련센터는 컨소시엄 운영규정 제19조제1항의 지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이 규칙 별지 제4호 서식의 지산맞 사업 지원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이사장은 공동훈련센터의 부담금 납입 여부를 확인한 후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예치금 계좌를 통하여 지원금을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부담금의 납입이 어려운 공동훈련센터의 경우에는 심의위

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공동훈련센터 부담금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예치금 계좌 이외의 별도 계좌를 개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이사장은 공동훈련센터가 공단이 정한 기한까지 「정부지원금 지원 및 집행기준」에 따른 부담금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하지 않을 경우, 부담하지 않은 해당 금액에 대응하는 비율에 따라 지원금을 감액하거나 이미 지원 받은 경우에는 반환받아야 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자율공동훈련센터는 당해연도 부담하여야 하는 부담금 총액(인건비, 훈련시설·장비비 각 부담금 합산액) 내에서 부담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특정 지원항목에 편성할 수 있다.

⑥ 공동훈련센터는 컨소시엄 운영규정 제19조제1항에 따른 운영비, 훈련시설 및 장비비, 프로그램개발비 등을 지급받으려는 경우 지원금 지급일 전일까지 지원금과 지원금에 대한 보증(또는 보험) 기간에 해당하는 약정이자 상당액을 가산한 금액 이상의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른 보증 또는 보험기간은 사업시행기간 종료일(훈련시설 및 장비에 관한 지원금은 해당 훈련시설 및 장비를 지원받은 날을 포함하여 5년간, 프로그램 개발비는 3년간)까지로 한다.

⑧ 공동훈련센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6호 서식의 협약서를 제출하고 제6항에 따른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2. 특별법에 따라 정부가 보호·육성하는 법인으로서 정부가 출연한 법인
3.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기관
4. 「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대학교
5.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의 국립연구기관 및 정부출연 연구기관
6.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7. 불가피한 사유로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이 어려워 회계정산 이후 운영비를 사후 지급하는 것으로 심의위원회에서 인정한 기관

⑨ 공동훈련센터는 별도의 회계 계정을 설정하여 지원금을 관리하여야 하며, 자체 수입 및 지출을 명확히 구분하여 별도로 회계 처리하여야 한다.

⑩ 공동훈련센터는 예금자 보호가 되고 금리가 높은 계좌를 개설하는 등 지원금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제31조(지원금 지원 및 집행기준)** ① 컨소시엄 운영규정 제11조, 제19조 및 제21조에 따른 공동훈련센터에 대한 지원금 지원 및 집행기준의 세부기준은 「정부지원

금 지원 및 집행기준」에 따른다.

② 「정부지원금 지원 및 집행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단순 오타 등 경미한 사항, 상위 규정 변경 및 정부 문서 시달 등에 따른 변경 사항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득한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32조(부담금)** ① 공동훈련센터는 심의위원회에서 정한 기한까지 컨소시엄 운영규정 제19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② 공단 이사장은 공동훈련센터가 부담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하지 않을 경우, 부담하지 않은 해당 금액에 대응하는 비율에 따라 지원금을 감액하거나 이미 지원한 경우에는 반환받아야 한다.

③ 공단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는 인건비와 훈련시설 및 장비비에 대한 부담금을 면제한다.

1. 「상공회의소법」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공동훈련센터
2. 제30조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 제7호의 기관은 제외한다)

**제33조(훈련시설 및 장비 등의 계약)** ① 공동훈련센터는 지원금으로 훈련시설 및 장비 등의 구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집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해당 법령에서 정한 금액 이상의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공고·입찰·계약체결 등을 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공동훈련센터가 제1항의 집행기준을 위반하여 집행한 경우에는 회계정산하여 환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4조(불공정거래행위 등 금지)** 공동훈련센터가 정부지원금을 사용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부터 제48조에 따라 불공정거래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5조(훈련시설 및 장비 등의 관리)** ① 공동훈련센터는 컨소시엄 운영규정 제19조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훈련시설 및 장비, 교재, 교보재 등에는 이 규칙 별지 제7호 서식의 훈련시설 및 장비 등의 표식을 부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② 공동훈련센터는 컨소시엄 운영규정 제19조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훈련시설 및 장비, 교재, 교보재 등의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자산관리대장을 갖추어야 한다.(이 경우 전자문서로 갈음할 수 있다)

1. 관리번호

2. 품명

3. 구입금액, 지원금액

4. 매 연도 말 기준의 수량 증감, 감가상각 등을 실시한 후 남은 가액(잔존가액)

5. 활용실적

③ 공동훈련센터는 지원받은 훈련시설 및 장비 등을 지산맞 사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일시적·간헐적으로 정부지원 교육·훈련·평가 사업, 협약기업 근로자의 훈련 시간 외 실습 등에 한해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지원받은 훈련시설 및 장비 등은 양도·교환·대여·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④ 공동훈련센터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 제35조제1항 및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46조, 「고용노동분야 국고보조사업 관리규정」 제35조에 따라 중요재산 취득 후 15일 이내에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별지 제3호 서식의 중요재산 현황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중요재산 처분제한 기간 이전까지 매년 6월과 12월에 변동현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중요재산 취득 및 변동현황 보고를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에 등록한 경우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별지 제3호 서식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제36조(훈련시설 및 장비의 내용연수 등)** ① 공동훈련센터는 지원을 받아 설치, 구입 등을 한 훈련시설 및 장비를 컨소시엄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에 따른 내용연수가 도래한 훈련시설로 교육훈련 등으로 활용할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된 경우
2. 「물품관리법」 제16조의2에 따른 조달청 고시 「내용연수」에 따라 내용연수가 도래한 훈련장비로 교육훈련 등으로 활용할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된 경우
3. 고장, 파손 등에 따른 수리비용이 해당 훈련시설 및 장비의 현재 감정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4. 활용실적이 많아 장비가 마모되거나 기술변화 등으로 정상적인 교육훈련을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5. 제5항에 따른 훈련시설의 대체로 기존 지원 장비에 대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훈련장비만 해당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역인자위는 해당 분야 전문가의 사전 검토 및 심의를 거쳐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공단 이사장에게 해당 훈련시설 및 장비의 불용처리 등에 대한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 및 제1항제2호의 경우는 지역인자위의 심의·의결을 거치거나 지역인자위 실무협의회에서 결정하면 공단 이사장의 승인을 받은 것

으로 본다.

④ 공단 이사장은 제1항제3호 내지 제5호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분야 전문가의 검토 의견을 거쳐 해당 훈련시설 및 장비의 불용 처리를 승인할 수 있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동훈련센터는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체시설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 지원받은 훈련시설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제37조(회계정산 수행자의 공모 및 선정)** ① 공단 이사장은 지원금의 공정하고 투명한 집행을 위하여 공동훈련센터에 대한 회계정산 업무를 전담할 자를 공모·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회계정산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1. 공단 사업과 관련 있는 내·외부 경영평가위원
2. 공단의 공인회계사
3. 공단 회계감사를 전담하는 회계법인의 회계사
4. 공동훈련센터 회계감사를 전담하는 회계법인의 회계사  
(이 경우 해당 공동훈련센터의 회계정산에 한한다)
5. 공동훈련센터 운영위원회 운영위원이거나 이었던 자  
(이 경우 해당 공동훈련센터의 회계정산에 한한다)

② 공단 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자와 업무약정서를 체결하고 공동훈련센터에 회계정산 수행자 선정 내역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공동훈련센터는 제2항에 따른 회계정산 수행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회계정산을 받아야 한다. 단, 공단과 회계법인 사이에 체결한 업무약정서로 충분한 구속력이 있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계약체결을 생략할 수 있다.

**제38조(정산서류 등)** ① 공동훈련센터는 컨소시엄 운영규정 제23조에 따라 품의서, 지출결의서, 영수증 등 정산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지원금 사용실적을 월 1회 이상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에 등록하여 공단 이사장과 회계정산 수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정산을 실시할 경우 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하는 정산 관련 증빙서류는 생략할 수 있다.

② 공단 이사장은 회계정산 수행자에게 공동훈련센터를 방문하여 회계정산 및 현장정산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회계정산 수행자는 훈련시설 및 장비, 훈련프로그램의 적정성 확인 등을 위하여 해당 분야 전문가와 동행할 수 있다.

③ 공단 이사장은 회계정산 수행자에게 회계정산 결과보고서를 총괄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공단 이사장은 훈련시설 및 장비비 또는 프로그램개발비를 지원받지 않은 공동훈련센터의 경우 정산서류 제출로 현장정산을 대체할 수 있다. 다만, 공단 및 회계정산 수행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현장정산을 실시할 수 있다.

**제39조(지원금 반납 및 환수)** ① 공단 이사장은 공동훈련센터에 대한 회계정산을 실시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수 또는 반납을 하도록 한 후 이를 국고에 입금하여야 한다.

1. 지산맞 사업 목적과 달리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
2. 지산맞 사업과 연관성이 없다고 인정된 경우
3. 관련 규정과 규칙의 지출항목을 위반한 경우
4. 착오 등으로 잘못 지출한 경우
5. 지원금 잔액, 이자 등이 발생한 경우

② 공동훈련센터는 컨소시엄 운영규정 제12조 및 이 규칙 별표 3에 규정된 세부기준에 따라 지산맞 사업이 선정 취소 되거나 사업종료, 지원제한 또는 지원중단된 경우 컨소시엄 운영규정 제24조제1항에 따라 감가상각하고 남은 가액(또는 잔존가액), 훈련 시설 및 장비의 임차보증금 전액, 운영비 등에 대한 지원금의 집행 잔액 및 이자를 현금으로 공단에 반납하여야 한다. 또한 이 경우 공단은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된 지원금은 환수할 수 있다.

③ 공단 이사장은 회계정산 시 환수금액 미발생 및 미확정 등에 따라 부득이한 사정이 인정되는 금액(퇴직급여충당금 등)은 다음 사업연도의 회계정산에 따른 조치를 시행할 때 해당 금액을 합산하여 환수·반납토록 할 수 있다.

**제40조(자체 회계정산)** 제37조,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자율공동훈련센터 등 이사장이 정한 공동훈련센터는 자율적으로 회계정산 수행자를 선정하여 정산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이사장에게 통보하는 것으로써 회계정산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제41조(회계정산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① 공동훈련센터는 회계정산 결과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8호 서식의 「이의(소명)신청서」에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회계정산 수행자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공단은 제1항의 이의신청, 소명자료, 회계정산 수행자의 의견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계정산 결과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42조(지원금 집행 등 확인)** ① 공단 이사장은 지원금의 적정한 사용 및 관리, 우수 사례 발굴, 애로사항 등의 확인을 위하여 지역인자위 및 공동훈련센터를 방문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단 이사장은 지역인자위 및 공동훈련센터에 대한 확인과 관련된 사항을 기록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② 공단 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을 공단 지부·지사에서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계획 심사, 지도점검 결과 등을 감안하여 정부 지원 시설·장비 및 훈련 실시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다.

## 제5장 보칙

**제43조(서류의 보존)** ① 공단 이사장은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지산맞 사업 계획 승인 및 변경 등을 위한 심사 관련 서류를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1. 지산맞 사업 계획 심사에 따른 의견서 및 채점표는 사업계획에 따른 사업연도 종료 후 다음 해 1월 1일부터 3년(전자문서로 갈음할 수 있다)
2. 제26조에 따라 공단 지부·지사 혹은 지역인자위에서 담당하는 수시훈련과정 심사와 관련된 의견서 등은 수시훈련과정 승인 후 다음 해 1월 1일부터 3년(전자문서로 갈음할 수 있다)
3. 지산맞 사업 계획 심사를 위한 심사용 사업계획서는 최종 사업계획서 제출 시까지
4. 심의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른 지산맞 최종 사업계획서는 사업계획에 따른 사업연도 종료 후 다음 해 1월 1일부터 3년(전자문서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지역인자위는 제10조 및 제14조에 따른 공동훈련센터 선정, 지산맞 사업 계획 수립 등과 관련된 서류를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1. 공동훈련센터 사업계획서 심사와 관련된 의견서 등 심사 관련 자료는 사업계획에 따른 사업연도 종료 후 다음 해 1월 1일부터 3년(전자문서로 갈음할 수 있다)
2. 지산맞 사업 계획 심의 등 지역인자위 회의와 관련된 자료는 5년(전자문서로 갈음할 수 있다)

③ 공동훈련센터는 지산맞 사업 운영에 관련된 서류를 다음 각 호의 기간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1. 신규 공동훈련센터 선정 또는 다음 연도 사업계획 심사를 위한 심사용 사업계획서는 당해연도 사업종료일까지
2. 사업계획 심의·의결에 따른 최종 사업계획서는 사업계획에 따른 사업연도 종료 후 다음 해 1월 1일부터 5년
3.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변경 사업계획서는 사업계획에 따른 사업연도 종료 후 다음 해 1월 1일부터 5년
4. 훈련과정 운영 및 정부지원금 관련된 서류는 정산이 완료된 날(정산을 하지 않는 훈련비용의 경우에는 지원받은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1월 1일부터 5년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부지원금 집행 및 지원에 관한 적용례) ① 이 규칙 시행에 따른 제31조 제1항의 「정부지원금 지원 및 집행기준」에 관한 사항은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의 사유로 2024년 지산맞 사업계획은 「정부지원금 지원 및 집행기준」에 의하여 심사된 것으로 본다.

제3조(자율공동훈련센터의 선정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이 규칙 시행에 따른 제11조2에 관한 사항은 2024년도 공동훈련센터 성과평가 결과부터 적용하여 2025년부터 시행한다.

제4조(공동훈련센터 선정 취소 및 지원 제한 등에 관한 기준 적용례) ① 별표 4 「공동훈련센터 선정 취소 및 지원 제한 등에 관한 세부기준」의 2. 성과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은 2024년도 공동훈련센터 성과평가 결과부터 적용하여 2025년부터 시행한다.

[별표 1]

< 공동훈련센터 선정에 관한 심사기준 및 심사방법(제10조 관련) >

1. 심사방법

- 공동훈련센터 선정은 심사위원회 심사, 심의위원회 심의·의결 순으로 실시한다.
- “사업필요성” 항목을 부적합 판정 받거나, 총점이 60점 미만인 공동훈련센터의 경우에는 심사위원단에서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

2. 사업계획 심사기준

| 영역  | 항목                            | 지표                      | 배점                               | 심사목적(문항)   | 방법                        |                        |                   |
|---|-------------------------------|-------------------------|----------------------------------|--|---------------------------|------------------------|-------------------|
| 계   |                               |                         | 100                              |  |                           |                        |                   |
| 사업<br>역량<br>(30)                                | 사업<br>필요성<br>(적부)             | 사업목적의<br>타당성            | -                                | 기관의 적정성  | 적부                        |                        |                   |
|   |                               |                         |                                  | 기관장의 사업에 대한 이해도와 사업 수행 의지<br>(재정자립화, 중장기 발전 계획 등 포함) |                           |                        |                   |
|   |                               |                         |                                  | 신청한 사업의 목적, 기대효과의 적정성                                |                           |                        |                   |
|   |                               | 사업내용의<br>중복성            | -                                | 다른 정부지원 사업과의 중복성                                     |                           |                        |                   |
|   | 기존 공동훈련센터와의 중복성               |                         |                                  |  |                           |                        |                   |
|   | 정부지원의<br>필요성                  | -                       | 컨소시엄 사업 참여를 위한 정부지원의 필요성         |  |                           |                        |                   |
|   |                               |                         | 기관<br>역량<br>(30)                 | 훈련<br>(15)   | 훈련 체계<br>수립 및<br>과정개발     | 8                      | 훈련체계 수립 및 과정개발 실적 |
|   | 유사한 타 훈련과의 차별성                | 정성                      |                                  |  |                           |                        |                   |
|   | 훈련<br>인프라<br>(15)             | 재정 건전성                  |                                  | 5  | 최근 3년간 직업훈련 실시 경험(실적)     | 정량                     |                   |
|   |                               |                         |                                  |  | 재정의 건전성(주. 회계사가 재무제표를 확인) | 정성                     |                   |
|   | 훈련 시설<br>및 장비                 | 10                      | 시설의 적정성(공동훈련센터가 보유한 훈련 시설<br>기준) | 정성   |                           |                        |                   |
|   |                               |                         | 장비의 적정성(공동훈련센터가 보유한 훈련 장비<br>기준) | 정성   |                           |                        |                   |
| 사업<br>투입<br>(30)                                | 협약기업<br>발굴 및 지원<br>(8)        | 협약기업<br>확보 계획           | 5                                | 협약기업 규모의 적정성   | 정성                        |                        |                   |
|   |                               |                         |                                  | 신규협약기업 확보 목표 및 계획                                    | 정성                        |                        |                   |
|   |                               | 협약기업<br>지원 계획           | 3                                | 협약기업 훈련참여율 및 유지율                                     | 정량                        |                        |                   |
|   |                               |                         |                                  | 협약기업 지원 및 유지 노력                                      | 정성                        |                        |                   |
|   | 사업전담<br>조직 및 인력<br>구성<br>(15) | 전담 조직<br>구축 계획          | 9                                | 전담 조직 및 인력 구성과 고용안정성 확보(채용<br>계획, 신분 등)              | 정성                        |                        |                   |
|   |                               |                         |                                  | 전담인력<br>전문성 확보<br>계획                                 | 6                         | 전담자 역량강화 계획 수립 여부      | 정성                |
|   |                               |                         |                                  |  |                           | 전담자 1인당 훈련 참여시간 및 참여계획 | 정성                |
|   | 인프라<br>구축 및 활용<br>(7)         | 시설 및 장비<br>구축 및<br>관리계획 | 7                                | 시설의 적정성(중장기 활용계획, 훈련계획, 지원<br>금활용 계획과의 연계 정도 등)      | 정성                        |                        |                   |
| 장비의 적정성(중장기 활용계획, 훈련계획, 지원<br>금활용 계획과의 연계 정도 등) |                               |                         |                                  | 정성   |                           |                        |                   |

| 영역               | 항목                         | 지표              | 배점 | 심사목적(문항)   | 방법 |
|------------------|----------------------------|-----------------|----|--|----|
|                  |                            |                 |    | 시설 장비 유지관리 계획의 적절성                               | 정성 |
| 사업<br>운영<br>(40) | 훈련<br>운영계획 및<br>관리<br>(40) | 훈련 목표           | 5  | 당해 연도 최소훈련목표(연인원)                                | 정성 |
|                  |                            | 수요조사<br>계획      | 10 | 지역 또는 협약기업의 수요를 반영한 훈련계획<br>(훈련과정, 방법 등) 수립의 적정성 | 정성 |
|                  |                            | 과정설계 및<br>개발 계획 | 10 | 훈련체계 수립 및 과정개발 계획                                | 정성 |
|                  |                            |                 |    | NCS 기반 훈련과정 운영 계획                                | 정성 |
|                  |                            |                 |    | 교·강사 확보 계획                                       | 정성 |
|                  |                            | 과정운영<br>계획      | 10 | 자체 훈련 운영 관리 체계의 적정성                              | 정성 |
|                  |                            |                 |    | 연간 훈련 실시 계획의 적정성(종합적 평가)                         | 정성 |
|                  |                            | 과정평가<br>계획      | 5  | 훈련과정 수료 후 평가계획의 적절성                              | 정성 |
| 평가결과 활용계획의 적절성   | 정성                         |                 |    |  |    |

### 3. 훈련과정 심사기준

| 심사영역      | 심사목적                                    | 방법 |
|-----------|---|----|
| 훈련과정의 적정성 |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사업 목적 및 지역 또는 협약기업 수요와의 부합 | 적부 |
|           | 채용예정자훈련의 경우 목표 취업률                      |    |
|           | 해당 훈련과정의 과정설계, 교·강사, 시설 및 장비의 적정성       |    |
|           | 해당 훈련과정의 연간 실시 계획의 적정성                  |    |

[별표 2]

< 공동훈련센터의 사업계획서 심사기준 및 심사방법(제14조 관련) >

1. 심사방법

- 공동훈련센터 선정에 관한 심사방법과 같으며 다만, 심사위원단 심사 시 예산, 지원금 및 기타 이사장이 정하는 내용에 따라 추가 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2. 사업계획 심사기준

| 영역                       | 항목                    | 지표                       | 심사문항(목적)                                       | 방법                |
|--------------------------|-----------------------|--------------------------|--|-------------------|
| 사업<br>투입                 | 협약기업<br>발굴 및<br>지원    | 협약기업<br>확보 계획            | 협약기업 규모의 적정성                                   | 정성                |
|                          |                       |                          | 신규 협약기업 확보 목표 및 계획                             | 정성                |
|                          |                       | 협약기업<br>지원 계획            | 협약기업 지원 및 유지 노력                                | 정성                |
|                          | 사업전담<br>조직 및<br>인력 구성 | 전담 조직 구축<br>계획           | 전담 조직 및 인력 구성과 고용안정성 확보(채용계획, 신분 등)            | 정성                |
|                          |                       |                          | 전담인력 역량강화<br>계획                                | 전담자 역량강화 계획 수립 여부 |
|                          |                       | 전담자 1인당 교육훈련 참여시간 및 참여계획 | 정성   |                   |
|                          | 인프라<br>구축 및<br>활용     | 시설·장비<br>구축 및 효율성<br>확보  | 시설의 적정성(증장기 활용계획, 훈련계획, 지원금활용 계획과의 연계 정도 등)    | 정성                |
|                          |                       |                          | 장비의 적정성(증장기 활용계획, 훈련계획, 지원금활용 계획과의 연계 정도 등)    | 정성                |
|                          |                       |                          | 시설 장비 유지관리 계획의 적절성                             | 정성                |
|                          |                       | 파트너 훈련기관<br>활용계획         | 파트너훈련기관 활용계획의 적절성                              | 정성                |
| 사업<br>운영                 | 훈련<br>운영계획<br>및<br>관리 | 훈련 목표                    | 당해 연도 최소 훈련목표(연인원)                             | 정성                |
|                          |                       |                          | 당해 연도 최소 훈련목표(수료율 등)                           | 정성                |
|                          |                       |                          | 당해 연도 최소 훈련목표(협약기업 참여율, 훈련참여율, 유지율)            | 정성                |
|                          |                       |                          | 당해 연도 최소 훈련목표 - 채용예정자 훈련(연인원, 취업률, 고용유지율)      | 정성                |
|                          |                       |                          | 당해 연도 최소 훈련목표(참여기업 및 훈련생 만족도)                  | 정성                |
|                          |                       | 수요조사 계획                  | 지역 또는 협약기업의 지역수요를 반영한 훈련계획(훈련과정, 방법 등) 수립의 적정성 | 정성                |
|                          |                       | 과정설계 및 개발<br>계획          | 훈련체계 수립 및 과정개발 계획                              | 정성                |
|                          |                       |                          | NCS 기반 훈련과정 운영 계획                              | 정성                |
|                          |                       |                          | 교·강사 확보 계획                                     | 정성                |
|                          |                       | 과정운영 계획                  | 자체 훈련 운영 관리 체계의 적정성                            | 정성                |
| 연간 훈련 실시 계획의 적정성(종합적 평가) | 정성                    |                          |  |                   |
| 과정평가 계획                  | 훈련과정 수료 후 평가계획의 적절성   | 정성                       |  |                   |
|                          | 평가결과 활용계획의 적절성        | 정성                       |  |                   |

### 3. 훈련과정 심사기준

| 심사영역      | 심사목적                                    | 방법 |
|-----------|---|----|
| 훈련과정의 적정성 |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사업 목적 및 지역 또는 협약기업 수요와의 부합 | 적부 |
|           | 채용예정자훈련의 경우 목표 취업률                      |    |
|           | 해당 훈련과정의 과정설계, 교·강사, 시설 및 장비의 적정성       |    |
|           | 해당 훈련과정의 연간 실시 계획의 적정성                  |    |

< 공동훈련센터 실적 산정지표(제14조제2항 관련) >

| 항목                  |     | 산정방식  |   |
|---------------------|-----|---|---|
| 협약기업 참여율            |     | [소속 근로자 또는 채용예정자(채용예정자를 위한 양성 훈련에 참여한 훈련생을 채용한 경우에 한한다) 1인 이상이 컨소시엄 사업에 속한 직업훈련에 참여한 협약기업의 순합계/협약기업 순합계]×100                              |   |
| 항상훈련                | 연인원 | 제3조제18호에 따른 연인원 수   |   |
|                     | 수료율 | [(수료인원/훈련참여인원)]×100   |   |
| 채용예정자<br>훈련         | 연인원 | 제3조제18호에 따른 연인원 수   |   |
|                     | 수료율 | [수료인원/(훈련참여인원-훈련 중 협약기업으로 취업한 미수료자)]×100  |   |
|                     | 취업률 | 협약기업<br>취업률   | (훈련수료 후 3월 이내 협약기업으로 취업한 사람/훈련과정 수료인원)×100  |
|                     |     | 비협약기업<br>취업률  | (훈련수료 후 3월 이내 비협약기업으로 취업한 사람/훈련과정 수료인원)×100 |
| 총괄 취업률              |     | (훈련수료 후 3월 이내 협약기업 또는 비협약기업으로 취업한 사람/훈련과정 수료인원)×100   |   |
| 훈련참여 인원 1인당 시간당 지원금 |     | 해당 기간 중 컨소시엄 사업으로 지원받은 시설·장비비 등 인프라 지원금 및 훈련비용/훈련개시일자가 해당 기간 중에 있는 [(A과정 훈련참여인원×A과정의 훈련이 실시된 총 훈련시간)+(B과정 훈련참여인원×B과정의 훈련이 실시된 총 훈련시간)+……] |   |

< 공동훈련센터의 선정 취소 및 지원제한 등에 관한 세부기준(제11조 관련) >

1. 조치 절차

- 가. 공단은 컨소시엄 운영규정 제12조에 따라 공동훈련센터에 대한 선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 등의 절차를 거치고 관련 결과를 심의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 나. 공동훈련센터의 선정 취소 및 지원제한 등에 관한 내용은 아래의 기준을 고려하여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심의하여 의결한다. 단, ‘다. 기타 사업 운영 관련 조치내용’중 ‘1)’ 내용은 심의위원회에서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하는 훈련기관이나 소재 불명의 훈련기관은 의견 진술이나 자료 제출의 기회를 별도로 부여하지 않음
- 다. 해당 과정 취소 등의 사유가 적발되어 조치기준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차기 사업계획 및 훈련과정 등에 대한 승인을 유보할 수 있다.
- 라. 선정이 취소된 공동훈련센터는 공단으로부터 선정 취소 통지를 받은 날부터 3년간 공동훈련센터 선정을 위한 신청을 할 수 없다.

2. 세부기준

가. 행정처분에 따른 조치내용

| 행정처분(고용노동부)     | 조치내용(한국산업인력공단)   |
|-----------------|--|
| 1) 해당과정 위탁·인정제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과평가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 제외</li> <li>· 전과정 위탁·인정제한 기간 중 지원금(인건비 포함) 지원 제한</li> <li>· 위탁·인정제한 기간 동안 발생하는 기존 구축 훈련시설·장비비 및 프로그램개발비 감가상각분 환수</li> <li>· 필요 시 기존 사업계획 반려 및 재수립</li> </ul>  |
| 2) 전과정 위탁·인정제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과평가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 제외</li> <li>· 3개월 전 과정 위탁·인정 제한을 받은 공동훈련센터에 한하여 성과평가 차하위 등급 부여</li> <li>· 6개월 전 과정 위탁·인정 제한을 받은 공동훈련센터에 한하여 성과평가 최하위 등급 부여</li> <li>· 1년 이상 전 과정 위탁·인정 제한을 받은 공동훈련센터에 한하여 선정 취소</li> </ul>  |
| 3) 지원·용자제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원·용자제한 기간 중 지원금(인건비포함) 지원 제한</li> <li>· 지원·용자제한 기간 동안 발생하는 기존 구축 훈련시설·장비비 및 프로그램개발비 감가상각분 환수</li> <li>· 필요 시 기존 사업계획 반려 및 재수립</li> <li>· 성과평가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 제외</li> <li>· 90일 이상 지원·용자제한을 받은 공동훈련센터에 한하여 성과평가 차하위 등급 부여</li> <li>· 180일 이상 지원·용자제한을 받은 공동훈련센터에 한하여 성과평가 최하위 등급 부여</li> <li>· 360일 이상 지원·용자제한을 받은 공동훈련센터에</li> </ul> |

| 행정처분(고용노동부)                                    |                    | 조치내용(한국산업인력공단)   |
|--|--------------------|--|
|  |                    | 한하여 선정 취소  |
| 4) “1)”, “2)”, “3)” 중 협약기업에 대한 훈련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 · 선정 취소  |
| 5) 파트너훈련기관이 훈련 부정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 해 당 과 정<br>위탁·인정제한 | · 해당 파트너훈련기관은 승인 취소<br>· 성과평가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 제외                  |
|  | 전 과 정<br>위탁·인정제한   | · 해당 파트너훈련기관은 승인 취소<br>· 성과평가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 제외<br>· 성과평가 1등급 강등 |

※ “4)”에 해당하는 경우의 판단기준: ① 공동훈련센터의 사업계속 수행능력, ② 협약기업에 대한 피해 정도, ③ 행정처분의 내용, ④ 지원받은 지원금의 규모, 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여부, ⑥ 유사사례에 대한 조치내역, ⑦ 컨소시엄 사업의 기여 정도, ⑧ 협약기업이나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

#### 나. 성과평가 결과 관련 조치내용

| 구분  | 조치내용             |
|---|------------------|
| 1) 공동훈련센터가 최근 3년 이내 2회 이상 ‘최하위등급(D등급)’을 받은 경우         | · 선정 취소          |
| 2) 공동훈련센터가 2년간 연속하여 ‘차하위 이하 등급(C또는 D등급)’을 받은 경우       | · 선정 취소          |
| 3) 공동훈련센터가 최근 5년 이내 3회 이상 ‘차하위 이하 등급(C또는 D등급)’을 받은 경우 | · 선정 취소          |
| 4) 공동훈련센터가 최하위 등급을 받고 차년도 훈련운영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 선정 취소 또는 지원 유예 |

#### 다. 기타 사업 운영 관련 조치내용

| 구분  | 조치내용  |
|---|---|
| 1) 공동훈련센터가 컨소시엄 운영규정 및 지산맞 운영규칙의 절차를 위반하여 사업을 운영한 경우(단, 회계정산 관련 조치사항은 이 규칙 제39조를 따름)<br>※ 조치 시 위반 행위가 확정된 시점(A년도)을 기준으로 함 | 위반 1회<br>· 경고 조치  |
|   | 위반 2회<br>· A년도 성과평가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 제외   |
|   | 위반 3회<br>· A년도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 제외<br>· A년도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 1등급 하향 조정            |
| 2) 컨소시엄 지원금과 관련하여 공동훈련센터 대표자 또는 사업 책임자 등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컨소시엄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 · 선정 취소   |
| 3) 공동훈련센터가 정당한 이유없이 6개월 이상 훈련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 · 선정 취소   |
| 4) 당해 연도 목표달성률 10% 이하의 기관 중 사업운영 지속이 어려울 것으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경우  | · 지원유예 또는 선정 취소   |
| 5) 그 밖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고용노동부 장관 또는 공단 이사장이 공동훈련센터가 컨소시엄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 · 선정 취소. 단, 기관 귀책사유가 아닌 정책변경 등의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 의결로 일정기간 지원중단 조치할 수 있다. |

[별표 5]

< 심의위원회 위원수당 등의 지급기준(제7조제2항·제8조제3항 관련) >

| 구분         | 위원회                 | 수행업무        | 수행시간       |      | 지급액          | 비고                      |
|------------|---------------------|-------------|------------|------|--------------|-------------------------|
| 수당         | 심의위원회               | 심의·의결       | 집체·화상      | 1일   | 40만원         | 심사위원장은<br>10만원 추가<br>지급 |
|            |                     |             | 서면         | 1회   | 20만원         |                         |
|            | 심사<br>위원단           | 집체·화상<br>심사 | 4시간 이하/1일  |      | 40만원         |                         |
|            |                     |             | 4시간 초과/1일  |      | 50만원         |                         |
|            |                     |             | 10시간 초과/1일 |      | 10만원<br>추가지급 |                         |
|            | 서면심사                | 1회          |            | 10만원 |              |                         |
| 심사운영<br>경비 | 실비                  |             |            |      |              |                         |
| 여비         | 공단 여비규칙 별표1의 제4호 적용 |             |            |      |              |                         |

- ※ 기타 비용지급에 대한 사항은 공단 “수입지출예산 집행지침” 준용
- ※ 회계정산의 현장정산 시 근무지내 여비지급 기준은 공단여비규칙 별표 1-2의 제①항 준용
- ※ 심의위원회 및 심사위원단 심사가 휴일에 개최되는 경우에는 간사 및 본부요원(위원회에서 행정업무 등을 수행하는 공단 직원 및 지원기관 직원) 수당(4시간 이하 시 9만원, 4시간 초과 ~ 6시간 이하 시 15만원(1일 기준))을 지급할 수 있다.
- ※ 심사가 심사 당일 오전부터 21시를 초과하여 진행되는 경우에는 별도 심사일자를 지정하여 추가 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 ※ 서면심사 1회 심사시 해당 기관 훈련과정이 30개 과정 이상인 경우에는 추가 심사(20개 과정)마다 5만원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 운영규칙 [별지 제2호 서식]

##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 사업 운영에 관한 표준약정서

|  |  |                        |   |
|--|--|------------------------|---|
| 기관<br>현황   | ○ 공동훈련센터명 : <span style="float: right;">○ 대 표 자 :</span><br>○ 법인(사업자)등록번호 :<br>○ 주 소 :                                 |                        |   |
| 약정<br>내용   | 목표 훈련과정명   | 훈련기간                   | 목표 훈련인원                                   |
|  | 0000 과정 등 00개<br>- (향상훈련) 0000과정 등 00개<br>- (채용예정자훈련) 0000과정 등 00개   |                        | 20 .00.00. ~ 20 .00.00.<br>(회계연도 기준)      |
|  |  |                        | 총 000명<br>- (향상훈련) 00명<br>- (채용예정자훈련) 00명 |
|  | 인프라<br>(시설,장비,<br>프로그램개발)  | 지원금                    | 천원  |
|  |  | 자부담금                   | 천원  |
|  | 약정이행보증   | 이행보증보험증권 또는 지원금 반환 협약서 |   |
| 목표 취업률   | %이상  |                        |   |
| 약정 보증기간<br>(인프라)   | 20 . 00. 00. ~ 20 . 00. 00.<br>* 보증 또는 보험기간은 사업시행기간 종료일(시설 및 장비에 관한 지원금은 해당 시설 및 장비를 지원받은 날을 포함하여 5년간, 프로그램개발비는 3년간)까지 |                        |   |
| 20 년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상호 약정을 체결한다.<br><br>불 입 :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 사업 운영 표준 약정조건 1부.<br><br><div style="text-align: center; margin: 20px 0;">20 년 월 일</div> 한국산업인력공단 <span style="float: right;">(공동훈련센터) 000000</span><br><br>이사장 <span style="margin-left: 100px;">(인)</span> <span style="margin-left: 100px;">대표(기관장)</span> <span style="float: right;">(인)</span> |  |                        |   |

##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표준 약정조건(공동훈련센터용)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이하 “공단”이라 한다)과 ○○○○○○(이하 “공동훈련센터”라 한다)는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 사업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약정한다.

**제1조(목적)** 이 약정은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 사업(이하 “지산맞 사업”이라 한다)을 수행하기 위해 공단과 공동훈련센터의 역할 및 책임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의성실)** 공단과 공동훈련센터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기초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이하 “통합관리지침”이라 한다) 및 「고용노동분야 국고보조사업 관리규정」(이하 “관리규정”이라 한다),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 및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 운영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과 이 약정에 따라 지산맞 사업을 성실히 수행한다.

**제3조(지원금의 지원)** 공단은 공동훈련센터의 요청에 따라 지산맞 사업 수행에 필요한 지원금을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공단은 공동훈련센터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증빙자료를 확인한 후 지원금을 지원한다.

**제4조(지원금 사용 등)** ① 공동훈련센터는 운영규정 및 규칙의 관련 내용을 준수하여 지원금을 사용해야 하며, 이 지원금으로 구축(예정)한 인프라(시설, 장비)는 연간 활용계획에 따라 지산맞 사업을 성실하고 투명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아울러 지원금 사용과 관련한 사항의 경우 운영규정 및 규칙에서 정해지지 않은 사항은 보조금법에 따른다.

② 공동훈련센터는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에서의 의결된 사업계획서에 따라 지산맞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운영규정 및 규칙을 준수하여 훈련비용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공동훈련센터는 사업 추진실적 및 지원금 및 훈련비용 집행현황을 공단이 정한 기일까지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공단의 현장 확인·관계서류의 열람 및 자료 제출 요청·사업연도 종료 후 사업비 정산 등의 관련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계획의 변경 등)** 공동훈련센터는 규칙 제16조제1항 또는 지산맞 사업에 대한 정부 정책이 변동된 경우 공단과 합의에 따라 목표 훈련과정명(수)과 목표 훈련인원을 변경할 수 있다.

**제6조(약정상 의무이행 최고 등)** 공단은 공동훈련센터가 이 약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불이행 당사자에게 약정상의 의무 이행을 독촉하며, 불이행 당사자가 최고서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약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추가적인 독촉 없이 상대방의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제7조(선정 취소 및 약정의 해지 등)** ① 공단은 통합관리지침 및 관리규정, 운영규정 및 규칙에 따라 공동훈련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위원회의 의결

을 통해 공동훈련센터 선정을 취소하고 약정을 해지할 수 있다.

1.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은 경우
2. 지원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공동훈련센터가 법령의 규정, 지원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고용노동부장관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4. 해당 지원금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5.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지원금을 받은 경우
6. 운영규정 제9조 및 제12조에 따라 공동훈련센터에 대한 지원이 중단된 경우

② 공동훈련센터는 약정이 해지된 경우 공단이 정한 기한까지 운영규정 제24조를 준용하여 공단이 안내하는 절차에 따라 현금으로 지원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약정의 해지로 인한 비용 환수 외에 보조금법에 따라 별도의 제재조치를 할 수 있다.

**제8조(약정기간)** ① 약정기간은 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사업수행기간(회계연도 기준)으로 하되, 공동훈련센터의 요구에 따라 변경 혹은 조정될 수 있다.

② 공동훈련센터는 약정기간의 변경 또는 조정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적극 이행하여야 한다.

**제9조(추가약정 및 해석)** ① 이 약정에 구체적으로 밝히지 아니한 사항은 공단과 공동훈련센터가 별도로 협의하여 서면으로 추가 약정할 수 있으며, 추가로 약정한 사항은 이 약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② 본 약정서에 관한 해석상 의문이 있을 경우 상호 합의하여 해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0조(소송의 관할 등)** ① 이 약정에 따라서 발생하는 권리나 의무에 관한 소송은 공단이 소재한 관할 법원으로 한다.

② 이 약정을 증명하고 각종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약정서를 2부 작성하고, 서명날인 후 공단과 공동훈련센터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공동훈련센터)

한국산업인력공단

□□□□□

주 소 :

주 소 :

이 사 장

(인) 대 표 자

(인)

※ 첨부서류 :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공동훈련센터 사업계획서 1부.

##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협약서

○○○○○(이하 “공동훈련센터”라 한다)와 □□□□□(이하 “협약기업”이라 한다)는 고용노동부 및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주관하는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 사업」(이하 “지산맞 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협약은 지산맞 사업에 관한 공동훈련센터와 협약기업간의 역할과 책임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관의 역할)** ① 공동훈련센터는 관련 법령 및 지산맞 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협약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직무분석, 재직근로자의 교육훈련 수요반영, 교육훈련과정 개발 및 운영 등 직업능력개발 지원
2. 협약기업의 원활한 인력공급을 위한 채용예정자 과정 개발·운영 지원
3. 채용예정자 과정 훈련생 선발 시 협약기업 관계자가 참여하는 심층면접, 훈련기관 견학, 채용지원 계획 등 훈련내용 및 협약기업의 채용 정보에 대한 사전 탐색 기회 제공
4. 채용예정자 과정 수료생의 역량수준 진단, 맞춤형 1:1 취업 컨설팅 제공, 협약기업에 대한 취업 지원
5. 그 밖에 협약기업의 체계적인 인적자원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협약기업은 재직근로자와 채용(예정) 근로자의 직무능력 향상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공동훈련센터의 훈련 수요조사 및 직무·수준별 훈련과정 설계, 훈련생 선발 면접 등에 참여
2. 필요할 경우 소속 재직근로자 중에서 역량과 자격을 갖춘 인력이 교육훈련 강사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3. 채용예정자 과정 수료생에 대한 적극적 채용 협력

**제3조(훈련비용에 관한 약정)** ① 협약기업은 공동훈련센터가 지산맞 사업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에 참여하는 경우 훈련비용은 「고용보험법」 제27조 및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0조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는 지원금으로 충당한다. 이 경우 협약기업은 공동훈련센터가 「고용보험법」 제27조 및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0조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는 훈련비용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직접 지원받는 것에 동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약정은 협약기업이 명시적인 해지에 관한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이 협약서의 효력이 유효한 기간까지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회계연도 중에 이 협약서의 효력이 상실하더라도 제1항에 따른 약정은 회계연도가 종료되는 시점까지 유효한 것으로 본다.

③ 공동훈련센터는 지산맞 사업으로 실시되는 교육훈련을 실시할 경우 「국가인적자원 개발컨소시엄 운영규정」 제19조제4항을 준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는 지원금 이외에 추가로 협약기업 또는 근로자에게 훈련비의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1. 공단으로부터 지원받는 지원금만으로는 교육훈련 실시가 어려운 경우
2. 훈련생의 도덕적 해이를 예방하고 교육훈련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훈련비용을 부담시키는 경우

**제4조(성실의무)** 공동훈련센터와 협약기업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기초하여 지산맞 사업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5조(협약기간)**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이 협약의 유효기간은 지산맞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까지로 한다. 다만, 지산맞 사업 종료 이전에도 협약기업이 1년간 연속하여 이 사업으로 실시되는 교육훈련에 근로자를 참여시키지 않은 경우는 협약이 해지된 것으로 본다.

이 협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를 2부 작성, 기명날인하여 양 기관이 각 1부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공동훈련센터)

○○○○○

주 소 :

대표자 :

(협약기업)

□□□□□

사업장관리번호:

주 소 :

대표자 :

(인)

(인)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귀하**

※ 첨부서류 :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협약기업 일반현황 1부

■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 운영규칙 [별지 제4호 서식]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 공동훈련센터 지원금 신청서**

|   |                        |          |                  |                       |
|---|------------------------|----------|------------------|-----------------------|
| 기관개요  | 기관명                    |          | 대표자              |                       |
|   | 소재지                    |          |                  |                       |
| 사업책임자<br>연락처                                      | 성명                     |          | 사업실무자            | 성명                    |
|   | 전화번호                   |          | 연락처              | 전화번호                  |
| 지원금 총액(①+②+③+④)                                   |                        |          | 금                | 원정                    |
| ① 인건비   |                        | ② 일반운영비  |                  | ③ 훈련시설·장비비            |
| 원   |                        | 원        |                  | 원                     |
|   |                        |          |                  | ④ 프로그램개발비             |
|   |                        |          |                  | 원                     |
| 사업기간  | 20 . . . ~ 20 . . .    |          |                  |                       |
| 지원금 지급 현황<br><small>※ 해당 연도 지원금액에 한<br/>할</small> | 지원금 총액(A)<br>(A=B+C+D) | 금회신청액(B) | 금회이전<br>신청누계액(C) | 지원금잔액(D)<br>(D=A-B-C) |
|   | 원                      | 원        | 원                | 원                     |
| 보조금 계좌  | 금융기관명                  | 예금주      | 계좌번호             |                       |
|   |                        |          |                  |                       |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운영규칙 제3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수  
행을 위한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직 인)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귀하**

※ 붙임서류: 보조금 통장사본 1부.





## 훈련시설 및 장비 등의 표식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교재의 표지 및 내지(양식)

< 표지 앞면 >

이 교재는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사업에 참여하여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지원하는 정부지원금으로 개발·제작·인쇄되었습니다.

교재의 명칭

저자

공동훈련센터명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

< 표지 - 서지정보 >

교재명

발행일 | 2000년 00월 00일

발행인 | 공동훈련센터 대표자 또는 사업책임자

펴낸곳 | 공동훈련센터명

주소 | 공동훈련센터 주소

전화 | 공동훈련센터 전화

팩스 | 공동훈련센터 팩스

이 교재는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공동훈련센터명)의 동의 없이는 무단전재와 복제를 포함한 어떠한 형태나 수단으로도 이 책의 내용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 내지1 >

## 참고문헌 등

< 내지2 - 서지정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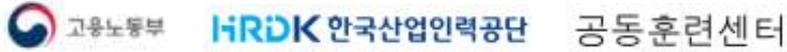
## 저자 소개

## 발간정보

이 교재는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공동훈련센터명)의 동의 없이는 무단전재와 복제를 포함한 어떠한 형태나 수단으로도 이 책의 내용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훈련장비 및 시설 표식(양식)

< 훈련장비 표식 >

|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훈련장비  |                  |
|--|------------------|
| 관리번호   |                  |
| 품명(모델명)  |                  |
| 구입금액   | 정부지원금 :<br>부담금 : |
| 입고일  |                  |
|  |                  |

< 훈련시설 표식 >

이 강의실(실습실)은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사업 정부지원금으로 지원하여 구축한 시설임.



■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 운영규칙 [별지 제8호 서식]

##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회계정산 결과 이의(소명)신청서

※ 본 신청서는 접수·검토후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이첩**됨을 알려드리니 정확히 작성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                                |                             |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           |
| 이의(소명)<br>신청인   | 공동훈련센터명 :                      | 유형 : 예)전략분야 공동훈련센터          |           |
|   | 전담자(성명) :                      |                             |           |
|   | 유선전화번호 :                       | 휴대폰 번호 :                    |           |
|   | E_MAIL주소 :                     |                             |           |
| 이의(소명)신청<br>항목  |                                |                             |           |
| 이의(소명)신청<br>내용<br>(내용이 많을 때는<br>별지로 작성)                               |                                |                             |           |
| 증빙서류<br>(증빙내용<br>기입하고 반드시<br>첨부 파일로 제출)                               |                                |                             |           |
|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회계정산 결과에 대해 위와 같이 소명자료를 제출하고 이의(소명)를 신청하니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                             |           |
|   |                                | 년            월            일 |           |
|   |                                | 공동훈련센터 대표                   | (서명 또는 인) |
|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회계정산 전담 회계법인 대표 귀하                                      |                                |                             |           |
| ※ 본 신청서에 훈련기관 대표자의 날인이 없는 경우 이의(소명)신청서 무효 처리됨                         |                                |                             |           |
| 첨부서류  | 이의(소명)신청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증빙 파일 |                             |           |